

의정활동보고서

제176회 임시회 (2003. 2. 5 ~ 2. 1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7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임시회 이후 한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상승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어려웠던 경제가 되살아 나기를 염원하며, 우리 도정에도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해를 회고해 보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라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수해를 비롯한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지혜를 모아 무사히 극복하였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4강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위기로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3년간 이어오던 무역흑자의 기조가 멈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 대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피해국이 되기도 하였으며, 은행의 부실한 고객정보 관리로 현금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도 지혜를 모아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 8월에는 “천마의 꿈”이란 주제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행사를 금년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금년 도정에 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도정 업무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금년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활기찬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2. 5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의회사무처 인사이동

4. 기타사항

V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례안

☐ 건의·결의안

☐ 동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6회 임시회는 2003년 2월 5일 개최하여 2월 14일 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2월 5일(수)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6회경상북도임시회회기결정의건, 도지사 및교육감의 도정에관한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2월 14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 (박승학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지역균형발전을위한낙후지역지원대책건의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처리한 후 제17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외 19인

라. 집회공고일 : 2003. 1. 24

라. 집 회 일 : 2003. 2. 5(수)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2. 5 ~ 2. 14(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20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회	15	1	2	2	2	3	3	2	-
누계	107	11	12	14	16	14	14	12	14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2.5(수) 14:30	1. 제177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2.6(목) 11:00	1. 업무보고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제 1 차
2.7(금) 11:00	1.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대책 건의안 2. 업무보고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차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2.6(목) 11:00	1. 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자연환경연수원 소관 2.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3.2.7(금) 11:00	1. 업무보고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2 차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3.2.6(목) 11:00	1. 업무보고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2.7(금) 11:00	1. 업무보고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제 2 차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3.2.6(목) 11:00	1. 업무보고 - 농수산국 소관 2.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2.7(금) 11:00	1.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제 2 차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2.14(금) 10:10	1.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	제 3 차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2.6(목) 11:00	1. 업무보고 - 경제통상실 소관	제 1 차
2.7(금) 11:00	1.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제 2 차
2.14(금) 10:10	1.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제 3 차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2.6(목) 11:00	1. 업무보고 - 건설도시국 소관	제 1 차
2.7(금) 11:00	1. 업무보고 - 소방본부소관	제 2 차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1 (81)	11 (81)	11 (73)	(8)				
조 례 안	소 계	6 (30)	6 (30)	6 (29)	(1)				
	의 회 제 안	(1)	(1)	(1)					
	도지사 제 출	4 (22)	4 (22)	4 (21)	(1)				
	교육감 제 출	2 (7)	2 (7)	2 (7)					
예 산 · 결 산		(8)	(8)	(4)	(4)				
동 의 · 승 인		1 (24)	1 (24)	1 (23)	(1)				
건 의 안		2 (6)	2 (6)	2 (5)	(1)				
결 의 안		1 (5)	1 (5)	1 (5)					
기 타 안		1 (8)	1 (8)	1 (7)	(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11 (82)	11 (81)	6 (30)	(8)	1 (24)	2 (6)	1 (5)	1 (8)			(1)
의회운영	(1)	(1)	(1)								
기 획	1 (9)	1 (9)	(4)		(3)	1 (1)		(1)			
행정사회	4 (19)	4 (18)	4 (11)		(7)						(1)
교육환경	2 (9)	2 (9)	2 (7)		(2)						
농 수 산	2 (7)	2 (7)	(2)		1 (4)	1 (1)					
산업관광	1 (11)	1 (11)	(4)		(6)		1 (1)				
건설소방	(6)	(6)	(1)		(2)	(2)		(1)			
특 별	(8)	(8)		(8)							
본회의	1 (12)	1 (12)				(2)	(4)	1 (6)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	1	1	
누 계	1	-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7 (25)	1 (1)	2 (2)	(4)	3 (4)	(1)	(1)	(3)	(3)	1 (6)
의회운영										
기 획	1 (2)									1 (2)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3)					(1)		(2)		
농 수 산	(4)			(1)	(1)				(2)	
산업관광	2 (5)		2 (2)				(1)			(2)
건설소방	4 (10)	1 (1)		(2)	3 (3)			(1)	(1)	(2)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6 (23)	6 (23)				2 (2)
의 회 운 영						
기 획	1 (2)	1 (2)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3)	(3)				
농 수 산	(4)	(4)				
산업관광	(3)	(3)				2 (2)
건설소방	5 (10)	5 (10)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정상진의원 외56 (2002.12.27)	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낙후지역지원대책 건의안	기 획 (2003.1.3)
경상북도지사 (2003.1.24)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1.27)
경상북도지사 (2003.1.24)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1.27)
경상북도지사 (2003.1.24)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1.27)
경상북도지사 (2003.1.24)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1.27)
경상북도지사 (2003.1.24)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농수산 (2003.1.27)
경상북도교육감 (2003.1.24)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3.1.27)
경상북도교육감 (2003.1.24)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3.1.27)

2. 조례공포사항

이송일	이 송 처	건 명	공포일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2003.1.6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2003.1.6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1.6
2002.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	2003.1.13
2002.12.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	2003.1.2
2002.12.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2003.1.2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2003.1.6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 조례	2003.1.6

이송일	이 송 처	건 명	공포일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	2003.1.6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1.6
2002.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003.1.6
2002.12.27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1.20
2002.12.27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3.1.13
2002.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	2003.1.13

3. 의회사무처 인사이동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사무처장	장 경 곤	2003.2.3일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주 근 호	”
산업관광전문위원	김 종 태	”

4. 기타사항

○ 경북대중 제야의종 타종식

- 일 시 : 2002. 12. 31(화) 23:50
- 장 소 :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매일신문사 신년인사회

- 일 시 : 2003. 1. 2(목) 11:3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최원병 의장

○ 경상북도여성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3. 1. 7(화)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3. 1. 8(수) 11:00
- 장 소 : 경북도청강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인사), 도의원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3. 1. 14(화)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 참 석 :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 농업경영인회 경상북도연합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3. 1. 16(목) 11:00
- 장 소 : 경북농업인회관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김주연, 양재경, 이정백 의원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03. 1. 17(금) 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의원(토론)

○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3. 1. 23(목) 15:00
- 장 소 : 경북도청강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2003 설날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3. 1. 23 ~ 1. 30
- 대 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36개소
- 참 석 : 도의원 41명(시설소재지 출신)

○ 의회사무처공무원 직장협의회 창립총회

- 일 시 : 2003. 1. 24(금) 15:00
-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의원식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 경북지역신문협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03. 1. 25(토) 12:3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국순회 토론회

- 일 시 : 2003. 1. 27(월) 09:2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최원병 의장

VI. 5분 자유발언

□ 제2차 본회의

박 승 학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송출신 박승학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은 인구의 반 이상이, 경제력의 70% 이상이 중앙으로 집중된 우리의 현실에서 당연히 예견되고 개선, 논의되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화플랜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북도는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방안, 기업전략산업의 육성방안,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도의 개선,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양방안 등 여러 가지 논의과제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대응방안 논의과정에서 학계, 언론계, NGO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시키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두 축은 집행부와 의회입니다. 행정사무의 집행과 이와 관련된 준비사항들은 집행부의 몫일 것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경북도민의 의견들은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타스크포스팀인 지방분권기획단의 편성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있었는가 라는 점과 향후 논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분담들은 논의되었는가를

되짚어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집행부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은 충분히 재검토 협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도 집행부가 준비할 수 없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러한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가 마땅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장단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입장에서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타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둘째, 이 타스크포스팀은 의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당분간 상설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말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급속히 추진될 의제와 맞추어서 상시적인 대응체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와 같은 기구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집행부의 지방분권기획단과 공통부분에서는 공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제에 우리 도의 균형발전 문제도 심각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안되는 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낙후지역대책건의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가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 미루어졌던 도청이전문제도 지역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6건
- 건의·결의안 : 3건
- 동의안 : 1건

□ 조례안 : 6건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2.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절 및 제63조 내지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제63조(설치) ① 자연산 토종 동식물의 이용개발에 관한 연구, 임업에 관한 산림사료의 보관, 전통 산림문화의 개발, 산림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의 시행, 야생동물 증식·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이하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 69번지에 둔다.

제64조(소장)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산림박물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득식물생태숲, 야생동물생태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
3. 산림에 관한 사료의 수집, 보관
4. 산림사료에 대한 학예연구
5. 임산물의 판매·유통지원
6. 전통산림문화 개발, 보존·보급에 관한 사항
7. 야생화 증식보급 및 품종개발
8. 전통 목재 이용기술의 보존과 조사 및 연구 개발
9. 야생동물유전자원의 수집보존과 증식·보급에 관한 사항
10. 야생조수구조와 치료, 진단에 관한 사항
11. 약용식물, 특산식물의 품종개발, 상품화
12.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개발, 연구, 보급에 관한 사항
13. 토종산림 동식물의 특수이용 가공에 관한 연구
14. 특용식물 자연생태 및 증식에 관한 연구, 조사
15. 자연산 동식물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
16. 기타 산림문화, 자연동식물 및 임산물 이용·가공 등 사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는

200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2.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555”를 “3,577”로 하고, 제1호 중 “1,619”를 “1,64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농업정보센터 운영 인력 10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되는 집행 기관의 정원 10명(농업정보센터운영)은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2명(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 운영)은 2005.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2.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제7조의2제2호”를 “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20톤미만 선박 등록의 세율)”을 “(소형선박등록의 세율)”로 하고, 본문중 “20톤미만의 선박”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한다.

제4절의 제목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기준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장부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2.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6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육성사업자”를 “육성사업대상자”로 하고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16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2.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교육자료의 제작·보급·교육상담,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등 활동을 지원하며”를 “교육자료의 제작·보급·교육상담 등을 하며”로 하고, 동조동항중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5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5호를 제15호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3절 화랑의 집”을 “제4절 화랑의 집”으로 하고, “제4절 경상북도립도서관”을 “제6절 경상북도립도서관”으로 하며, 제22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한다.

“제5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를 “제3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로 하며, 제25조제2항중 “461번지”를 “478-3번지”로 하고, 동조 및 제26조 중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로, “교육정보센터”는 “교육정보센터”로 하며, 제25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7조(중전의 제27조) 제6호중 “제24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1조 다음에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절 다음에 제3절(중전의 제5절)을 삽입한다.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제22조 (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8번지의 1에 둔다.

제23조 (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 (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기술의 정보수집 및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연수 및 학생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실험기구 수리에 관한 사항
6. 과학관련 전시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8. 전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9.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기타 제2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제9조를 각각 제7조·제8조로 하고, “제3절 화랑교육원”을 “제4절 화랑교육원”으로 하며, 제10조·제11조를 각각 제11조·제12조로 한다. “제4절 경상북도립도서관”을 “제6절 경상북도립도서관”으로 하며,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5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를 “제3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 중 “교육정보센터”를 “교육정보센터”로 하고, 제15조·제16조를 각각 제9조·제10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다음에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절 다음에 제3절(종전의 제5절)을 삽입한다.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제13조 (실비징수)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 실험기구 및 교구를 제작공급할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자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1관서의 “교육연구기관(분원 포함)”을 “교육연구기관”으로 한다.

③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1관서의 “교육연구기관(분원 포함)”을 “교육연구기관”으로 한다.

④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을 포함한다)”을 “기타교육기관장”으로 하고, 제2조, 별표의 제목 및 수임기관란중 “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 포함)”을 각각 “기타교육기관장”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최 원 병

2003. 2.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418명(한시정원 24명 포함)”을 “5,401명(한시정원 7명 포함)”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5,404명(한시정원 24명 포함)”을 “5,387명(한시정원 7명 포함)”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 7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건 의 · 결 의 안 : 3건

-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대책 건 의 안
-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에 따른 건 의 안
-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결 의 안

□ 동의안 : 1건

-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